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649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김태호의원안) ...	2

I. 개요

1.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56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8.

(3) 회 부 일 : 2024. 11.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24조제2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김태호의원안)

현행	개정안
☐ 손금에 산입하는 50% 한도 특례기부금(제24조제2항)	☐ 한국국제교류재단 추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가액 ○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교육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국제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장학재단 등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신설>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
○ 국립대학병원, 국립치과대학병원, 사립학교 운영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 김태호의원안 2024. 11. 18. 발의(의안번호 5649)

☐ 개정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

하는 기부금을 50% 한도인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기부금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현행법 제24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기준으로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 이외 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¹⁾

① 특례기부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② 일반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등 공익성 있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기부금으로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손금 산입한 특례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③ 이외 기부금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으로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음.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또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등의 사업을 이행하고 있음.²⁾

1) 2020. 12. 22.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던 용어를 삭제하고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50% 한도)’, ‘제24조제3항제1호의 일반기부금(10% 한도)’로 분류하게 됨

2)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동 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으로, 외교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제14조 및 「국가재정법」 [별표2]³⁾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교류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국제교류기금 주요 수입현황]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2025년
법정부담금 (59-593) ⁴⁾	69,595	69,595	54,470
민간출연금 (59-594) ⁵⁾	2,013	2,013	2,013

자료: 외교부

□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⁶⁾ 및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일반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특례기부금 단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영)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5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 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이 재단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통해 조성
- 6)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2024년 4분기 공익법인 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개정안과 같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금이 확대되고, 해당 기부금 전액은 한국어·한국학 연구기관의 활동 및 각종 국제 교류사업에 활용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특례기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 등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부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익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전 특례기부금 단체였던 공공기관도 민간 기부금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17년 말 세법개정을 통해 일반기부금 단체로 이관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

7) 단, 경과규정을 통해 2017년 지정된 기관은 2022년까지 6년간 특례기부금 단체로서 인정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삭 제>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 <삭 제>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삭 제>

③ 제2항제6호 또는 제7호(→<삭 제>)에 해당하는 법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9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제24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 유형별 범위]

구 분	구체적 범위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사립학교 등 교육기관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국립대학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법인 등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

참고로, 현재 공공기관 중 특례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 장학재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법인세법」 8)에 열거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제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8)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 마. 다음의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한국장학재단을 제외하면 모두 의료기관
임.

둘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만 높은 한도로 기부금 손금산입
을 허용하는 것은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민간 기부금단체⁹⁾와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공익성의 정도, 민간단체와의 형
평성, 사후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특례기
부금 단체 지정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49

6)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8)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9) 국제교육문화재단, 국제한국어교육재단,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친선협회, 한국문화교류진흥원
등